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. 5. 23 선고 2021가단217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종중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박인철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아라, 김준기

변 론 종 결 2022. 4. 25.

판 결 선 고 2022. 5. 23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68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C공파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.

나. 평택시 E 전 916㎡(이하 ‘E 토지’라고 한다)에 관하여, ① 1962. 2. 27. F 앞으로 1960. 12. 7. 상환완료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② 1991. 2. 28. G, H, I 앞으로 각 314/1256 지분에 관하여 1991. 2. 25.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, ③ 2010. 7. 8. 피고 앞으로 위 I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1999. 9. 2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평택시 J 답 460㎡(이하 ‘J 토지’라고 한다)에 관하여, ① 1962. 2. 27. F 앞으로 1960. 12. 7. 상환완료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② 1991. 1. 25. G, H, I 앞으로 각 115/460 지분에 관하여 1991. 1. 22.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, ③ 2010. 7. 8. 피고 앞으로 위 I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1999. 9. 2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라. E 토지 중 피고 명의의 지분은 2017. 2. 21. K 앞으로 2016. 11. 7. 공매를 원인으로 한, J 토지 중 피고 명의의 지분은 2019. 7. 18. L 앞으로 2019. 7. 1. 공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종원인 피고에게 E, J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데, 피고가 조세를 체납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공매가 이루어졌고, 그 낙찰대금으로 피고의 조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,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68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3.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항변의 요지

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E, J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면,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총유물인 E, J 토지의 관리 및 처분 또는 보존에 관한 행위로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,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,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(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E, J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면,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총유물인 E, J 토지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,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유지상